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783

제출연월일: 2021. 6. 25.

제 출 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에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구민이 손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실정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단독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제설·제빙 책임순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다. 제설·제빙 범위 및 시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제5조)

라.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마. 제설·제빙작업의 중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바. 제설·제빙 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사. 제설·제빙도구 비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3. 근거법규: 따로 붙임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4.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사무심의: 해당사항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여성가족과-19778호, 2021. 5. 17.)

라. 입법예고: 2021. 5. 10. ~ 5. 31.(21일간) / 의견 없음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 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보도"라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나 그 밖 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 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 방도는 제외한다)로써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또는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 시한 도로를 말한다.
- 4. "주거용 건축물"이라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하다.
-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 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써 사전에 구조 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 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 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써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 8.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 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 명보호 및 시설물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 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점유자). 관리자.
 -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관리자), 소유자

- 20 (제237회-복지건설위제2차부록)
-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별표 2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 3. 시설물의 지붕
 - 가.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cm)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1의 제설·제빙 시점 적설량에 이르고 시설물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제빙작업자의 안 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해야한다.
 -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야 한다.
 -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겨야 한다.
 -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

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겨야 한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
-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 •관리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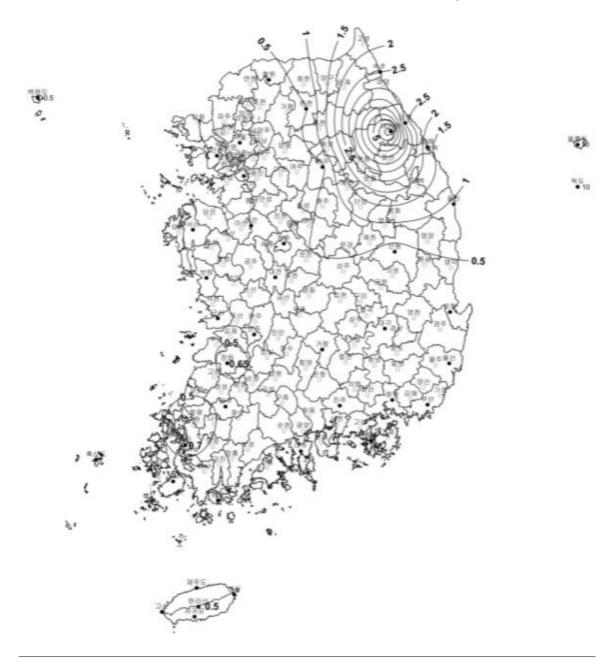
[별표 1]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cm)

건축구조기준(KBC 2016, 국토교통부) <그림 0304.2.1> 기본지상적설하중 (kN/m2)	적 설 기본지상적설 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cm)	설량 특정 지형조건 (고지대, 산간지방) 가중치(1.5배) 적용 환산 적설량 (cm)	·	 제 빙 적 설 량 특정 지형조건 (고지대, 산간지방) 가중치(1.5배) 적용 환산 적설량 (cm) 	비고
0.5이하 지역	50.0	75.0	25.0	37.5	
0.5초과 1.0이하 지역	55.0	82.5	27.5	41.3	
1.0초과 1.5이하 지역	63.0	94.5	31.5	47.3	
1.5초과 2.0이하 지역	67.0	100.5	33.5	50.3	
2.0초과 2.5이하 지역	70.0	105.0	35.0	52.5	
2.5초과 3.0이하 지역	84.0	126.0	42.0	63.0	
3.0초과 3.5이하 지역	98.0	_	49.0	_	
3.5초과 4.0이하 지역	112.0	_	56.0	_	
4.0초과 4.5이하 지역	126.0	_	63.0	_	
4.5초과 5.0이하 지역	140.0	_	70.0	_	
5.0초과 지역	140.0	_	70.0	_	

^{*} 기상예보 강설량이 A~Bcm일 경우 제설·제빙 기준 예보강설량은 (A+B)/2로 본다.

^{*} 최소지상적설하중은 0.5kN/m2이상으로 한다.

<그림 0304.2.1> 기본지상적설하중S_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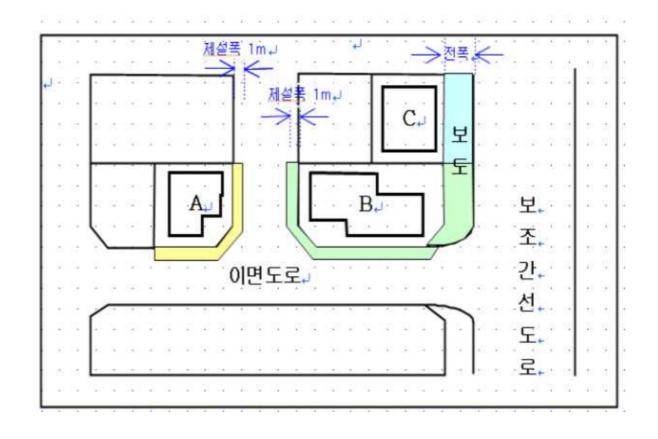


주) 1) 지역명칭은 통계청의 2012년 1월 25일 기준 "한국행정구역분류"에 따라 시, 군을 단위로 작성하였다.

2) ●은 최심적설깊이 자료가 있는 지역, ○는 최심적설깊이 자료가 없는 지역이다.

[별표 2]

제설·제빙의 책임범위 평면도(제4조 관련)



<비고>

1. A 건축물: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

2. B 건축물: 보도와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

3. C 건축물: 보도에 접한 경우

근거법규

□ 「자연재해대책법」

-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 ②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ㆍ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3. 7.]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 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4호
 -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비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3. 작성자

○ 소 속: 안전총괄과

○ 직 급: 지방공업주사보

○ 성 명: 장병태

○ 연락처: 052-290-4064